

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45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□ 본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를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,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.

□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

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(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2호) 개정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